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령안 예고

환경부 자료제공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본고에서는 개정령안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신 · 구조문을 비교해 밥안의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에 대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정비 · 보완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하여 재활용 기준비용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 · 시행('03.8.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안 제18조제1호 가목)

나. 가정용 살균 · 살충제의 용기를 합성수지용기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금속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안 제18조제1호사호)

다. 발포합성수지 완충재가 전자제품외에도 전기제품 등에도 다량 사용되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대상에 전기제품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호)

라.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가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그 밖의 단일재질 용기류 포장재 kg당 327원, 그 밖의 용기류 및 필름류 포장재 kg당 467원)하기 위함(안 별표 6 제1호)

마.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에 프린터(kg당 367원), 복사기(kg당 239원), 팩시밀리(kg당 378원)를 추가함(안 별표 6 제6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동조동호사목 중 "살균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를 "살균제를 말하며"로 한다. 동조제2호 중 "전자제품"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기류,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 · 사무기기"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중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별표 6제1호 라목의 (4) 및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의 아 내지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단일재질 용기류 포장재	kg당 327원
(5) 그 밖의 용기류 및 필름류 포장재	kg당 467원
아. 프린터	kg당 367원
자. 복사기	kg당 239원
차. 팩시밀리	kg당 378원

부 칙

이 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포장재)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 · 포장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 포장재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 포장재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제 18조 (재 활 용 의 무 대 상 제 품 · 포 장 재)———————————————————————————————————————.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 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1.———————————————————————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나.~바. (생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살충 · 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 · 살균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사.———————— 살균제를 말하며, ————————————————.
2. 전자제품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2.「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기류, 오디오 · 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 · 사무기기—— ——
3.~8. (생략)	3.~8.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3. (생 략)1.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제품 · 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 · 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 포장재의 출고 · 수입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제품 · 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출고 · 수입실적서(전자문서로 된 실적서를 포함한다)————————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결산보고서 등 제품 · 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